

대통령령 제 호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5(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)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소령의 연령정년 경과조치 적용 및 적용례는 별표 11과 같다.

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령의 연령정년 경과조치 적용 및 적용례

출생년도	적용되는 연령정년	연령정년이 도래하는 시기	연령정년 도래에 따른 전역일자
1978년 이전 출생	45세	~2023년 12월 31일	2024년 1월 이전까지의 매월 말일
1979년 출생	46세	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	2025년 2월 ~ 2026년 1월까지의 매월 말일
1980년 출생	46세	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	2026년 2월 ~ 2027년 1월까지의 매월 말일
1981년 출생	47세	2028년 1월 1일 ~ 2028년 12월 31일	2028년 2월 ~ 2029년 1월까지의 매월 말일
1982년 출생	47세	2029년 1월 1일 ~ 2029년 12월 31일	2029년 2월 ~ 2030년 1월까지의 매월 말일
1983년 출생	48세	2031년 1월 1일 ~ 2031년 12월 31일	2031년 2월 ~ 2032년 1월까지의 매월 말일
1984년 출생	48세	2032년 1월 1일 ~ 2032년 12월 31일	2032년 2월 ~ 2033년 1월까지의 매월 말일
1985년 출생	49세	2034년 1월 1일 ~ 2034년 12월 31일	2034년 2월 ~ 2035년 1월까지의 매월 말일
1986년 출생	49세	2035년 1월 1일 ~ 2035년 12월 31일	2035년 2월 ~ 2036년 1월까지의 매월 말일
1987년 이후 출생	50세	2037년 1월 1일 ~	2037년 2월 이후부터의 매월 말일

* 연령정년에 따른 전역일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령정년에 해당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임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5(연령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) 법률 제1947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소령의 연령정년 경과조치 적용 및 적용례는 별표 11과 같다.</u>